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

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함)에서는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이론 교육 4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함.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현재 시·도별로 6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례는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로 지정취소 1건이 있었음.

개정안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 중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를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재 처분을 개선함으로써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참고로, 개정안은 국정과제 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관련 허가·등록 등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법령에 대한 소관부처 전수 조사 및 과제발굴을 통한 정부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같은 취지로 제22대 국회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